

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705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3년 2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 목차

포커스: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 박종혁(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장)

장애인계 뉴스

1. 인권위, 장애인보험 차별개선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2. 복지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만화책 제작
3.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점자 신용카드 발급한다
4. 안내문 못 봐 아파트 분양신청 놓친 시각장애인, 재건축 조합원 자격 인정
5. 대기업 계열사 4곳 중 3곳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6.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웹 접근성 지키지 않아 인권위에 진정 제기돼

기획: '알아야 제대로 누릴 수 있다'...올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제도들

독자마당: 삶의 여유를 가르쳐준 책,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다」 / 이현진(충남 아산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1월 16일~1월 31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73): '파파라치'와 '워터파크'의 순화어

~~~~~

포커스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박종혁(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장)

요즘 장애인의 건강관리가 화두이다. 왜 그럴까? 우리 속담에 “복 중에는 건강복이 제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은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은 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해 만성질환이 조기에 발병하거나, 이차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경제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건강 유지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20%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53.2%(미국 장애인은 80~90%)인데, 비장애인과 비교해서는 어떠한지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외국에 비해서는 왜 낮은지에 대한 기본통계조차 없다.

이렇듯 장애인 건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나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 출신의 하버드대학교 교수 아마르티야 센(Amartya Sen)은 “건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일차적인 조건인 동시에 가치를 부여해야만 하는 인간 능력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강조한다. 다른 말로 하면 건강은 인간의 능력을 결정짓는 최우선 조건인 동시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인권도 건강하지 못하면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건강권은 건강할 권리(right to health),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right to health care),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권리(right in health care)의 범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이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법이 장애인의 건강권을 잘 보호하고 있을까?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듯이 다음의 예는 한 장애인의 이야기이지만, 대부분의 장애인 경험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장애인들의 경험 데이터는 한 장애인으로부터 시작된다. 필자는 갓난아기 때부터 선천성 망막색소변성증을 갖고 있다. 건강에 관심이 많지만 시각장애로 인해 건강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로 인해 때때로 안통이 있고, 신체활동이 쉽지 않아 비만에 대해 항상 걱정을 한다. 외부에 나가기 쉽지 않아 건강유지 활동을 하기도 어려운데,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가려면 누군가가 매번 같이 가져야 한다. 길거리의 턱들과 장애물로 인해 무릎이 까이고 넘어져서 얼굴에 상처도 나기 일쑤다. 유아기 때부터 최근까지 필자의 정강이는 항상 멍이 들어 있다. 멍이 없어질 쯤 다시 상처가 나기 때문이다. 집에서부터 직장까지 걸어 다니면서 운동하고 싶지만 블라드나 장애물로 인해 그러기가 쉽지 않다.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의 적응과정으로 인한 불안 및 걱정, 쉽지 않은 사회 환경들과 직장생활로 인한 피로감 또한 나를 억누른다. 이러한 이유들로 술, 담배 등 건강을 해치는 생활습관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을 주위에서 자주 보아 왔다.

다시 전체 장애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우리나라 장애인은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 장애물로 인해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병원 내에서의 권리도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고혈압(2.3배), 심혈관질환(6.5배), 관절염(3.1배), 당뇨(3.9배), 만성통증(16.2배) 등의 유병률이 높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겪는 장애인의 75.9%가 장애상태와 관련이 있거나 장애 외의 다양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은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현재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검진율이 낮고, 비만을 포함한 스트레스정도 흡연율 등은 더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UN

(국제연합)의 전문기구-편집자 설명)에서는 <장애인과 건강>이라는 보고서를 출간했는데, 장애인건강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라고 권하고 있다. WHO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①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이 좋지 않다 ② 비장애인보다 학교생활이 어렵다 ③ 비장애인보다 저임금으로 일하거나 실직상태인 경우가 더 많다 ④ 비장애인보다 가난할 가능성이 높다 ⑤ 비장애인보다 사회, 가정의 일원으로 지내기 어렵다 등이다.

WHO는 장애인 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장애인 건강관련 예산 확보, 장애인의 재활의료시스템 구축,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장애인의 지지서비스 제공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하도록 제시하였다. 특히 장애인의 건강 수준을 올리기 위해 법률을 재정비하라고 권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재활, 교육, 취업, 근로 등의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건강수준을 비장애인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WHO에서 지적하는 장애 관련 문제들을 우리나라는 법으로 제정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교생활 문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실직이나 저임금난의 문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장애인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건강하지 못한 비장애인도 많은데 왜 특별히 장애인만을 위한 건강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고 되묻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사회참여를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이 우선이며, 장애인이 건강해지고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일의 시발점은 장애인의 건강권 관련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을 해치는 사회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장애인계 뉴스

### 1. 인권위, 장애인보험 차별개선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지난 1월 10일 장애인 보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는 관행을 깨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되는 사례와 그에 대한 기준을 인수단계, 보험계약 및 유지, 보험금 지급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그동안 다소 모호했던 차별의 입증 책임과 정당한 사유의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담았다.

인권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보험 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보험계약 성립 이후 장애를 이유로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증명서나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했다.

차별행위를 입증하는 책임은 당사자와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했다.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하고,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보험회사가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각종 공제조합 및 외국보험회사 등에 적용될 예정이며, 보험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각 보험사 내규에 가이드라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험 차별행위 규정과 더불어 가이드라인에서는 장애인 보험관련 연구시행도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 보험사고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 보험 관련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장애계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개정 법률을 상정했지만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 법무부도 지난달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조건 등을 규정한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계, 국회, 법조계의 노력과 더불어 인권위도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확정함으로써 힘을 보탬 수 있게 되었다.

인권위는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동안 지속되어 온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중도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차별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2. 복지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만화책 제작

시각장애가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도 그림과 대화 말풍선으로 구성된 만화책(카툰)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웹툰(인터넷에 배포하는 만화-편집자 설명) 「안녕, 딱공?」 연재 2주년을 계기로, 시각장애 어린이, 청소년에게 재미와 공감을 줄 수 있는 촉각만화책 「손끝으로 읽는 만화 - 안녕, 딱공?」 7편을 재편집해 출간했다.

웹툰 「안녕, 딱공?」은 실존하는 시각장애 어린이를 모티브로 ‘딱공’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극복과 자립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내용으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복지부 뉴스레터와 블로그에 매주 1회씩 연재됐다.

촉각만화 「안녕, 딱공?」은 말풍선을 통해 등장인물의 대화와 감정을 전달하고 인물, 상황 묘사를 통해 간결한 이야기를 전하는 만화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만화의 표현 기법이 촉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의 질감과 표현기법을 사용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시각장애인 대체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점자도서관의 소장도서

82,794권(32,384종) 중 촉각도서는 98권(46종)으로, 촉각도서 중 실제 만화의 개념을 살린 촉각만화책은 없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박물관 등 관련 기관도 촉각만화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에 제작된 「손끝으로 읽는 만화 -안녕, 딱공?」이 국내 최초의 촉각만화책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제작에 참여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만화에 사용되는 표현기법으로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립맹학교 학생들의 현장 검증과 입체효과를 위한 특수가공 작업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고 말했다.

촉각만화책 「손끝으로 읽는 만화 -안녕, 딱공?」은 1월 중 시각장애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등 300여 곳에 배부됐다.

### 3.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점자 신용카드 발급한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점자가 표기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부산은행(은행장 성세환)은 지난 1월 29일 시각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상품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주요 정보를 점자 형태로 표기한 점자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점자로 발급이 가능한 카드는 그린카드(신용카드)와 마이존체크카드(체크카드) 등 2종으로 기존의 서비스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점자카드의 종류를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부산은행이 계열사로 있는 BS금융그룹은 지난해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정보단말기와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관련 사회공헌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도 지난달 30일부터 점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그린신용카드와 단디그린체크카드 2종을 점자가 표기된 카드로 발급하며, 대구은행도 향후 다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점자카드 발급에 앞서 대구은행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ATM음성안내서비스 및 저시력자를 위한 ATM화면확대기, 점자 보안카드 등을 도입하여 시행해 금융편의성을 도왔으며, 장애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점자카드를 발급하는 금융사가 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발급 가능한 카드의 종류가 한두 가지에 그치고 있으며, 홈페이지 웹 접근성이 준수되지 않아 인터넷 뱅킹 및 카드 이용실적 조회 등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의 의무준수 대상이 모든 법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웹사이트와 인터넷 뱅킹의 대대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시행을 통해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더불어 고객으로서의 권리도 함께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

### 4. 안내문 못 봐 아파트 분양신청 농친 시각장애인, 재건축 조합원 자격 인정

지난 1월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서울 송파구 S아파트 소유자인 정모씨(76)가 "정상적인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권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인 정씨가 우편물을 송달받을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받았더라도 그 내용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씨를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으로 볼 수 없어 여전히 분양대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급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정씨는 지난 2003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S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 정씨는 이후 지난 2011년 1월 조합 측으로부터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직접 받았지만 조합이 공지한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으로 분류되면서 분양권을 잃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아파트 재건축조합원이 심각한 시각장애로 가정으로 배달된 분양신청 안내문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실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소송절차로 들어가기 이전에 시각장애인이 우송되어오는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제 때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 5. 대기업 계열사 4곳 중 3곳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4일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업, 정부기관 등 총 1,887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부영, GS, 현대, 대우건설 등의 장애인 고용률은 1%에도 못 미쳤으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중 엘오케이와 유니토스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기업 계열사 610곳 가운데 76%인 468곳이 2.5%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이 중 113곳(18%)은 고용률이 1.3% 이하였다. 기업별로 보면 부영이 0.26%로 가장 낮았고 GS(0.82%), 현대(0.84%), 대우건설(0.99%) 등이 1%에 못 미쳤다. 대림(1.04%), 코오롱(1.05%), SK(1.08%)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다. 반면 한국지엠, 두산, 동국제강, 에스오일, 삼성 등은 계열사 모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켰다.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중에서는 엘오케이와 유니토스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인터비즈시스템(1명), 풀무원식품(2명), 다음커뮤니케이션(2명), 동원산업(2명) 등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4%로 2007년 1.54% 이후 매년 꾸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기업 중 30대 대기업(1.84%)과 1,000명 이상 대기업(1.88%)의 고용률은 공무원(2.53%)이나 공공기관(2.79%)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고용노동부는 30대 대기업 계열사 4곳 중 3곳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률(2.5%)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현실을 고려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6.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웹 접근성 지키지 않아 인권위에 진정 제기돼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 누리집이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아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1월 23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주최로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수위원회의 사과와 홈페이지 개편, 관련 정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번 진정에 참여한 시각장애인은 박모 씨는 “인수위 홈페이지는 얼핏 보기에 웹 접근 사항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콘텐츠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운 곳이 많다”면서 “예를 들어 취임식 참여 신청을 하려는데 어느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인수위원회를 찾아가는 길에 대한 구체적인 텍스트 설명도 없어 위치를 알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장애인정보문화누리와 시각장애인들은 지난해 11월 7일에도 대선 예비후보들의 홈페이지가 장애인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당시 박근혜 대선 예비후보 등 4명의 후보를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

기획

‘알아야 제대로 누릴 수 있다’...올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제도들

지난 2월 4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됐으며, 4월부터는 모든 법인의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한다. 올해부터 복지,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관련 제도들이 바뀌고 신설된다. 이번 호 기획코너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시각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우선 지난 1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월 2만원씩 인상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을 매년 2만원씩 늘려 2017년까지 추가생활비용의 80%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장애 1~2급) 1인당 소득은 54만 3천원이며, 재활치료 등 장애로 인해 월 23만 6천원의 생활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2급 장애인까지 확대됐으며,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액도 인상됐다. 지난해까지 1급 장애인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2급 장애인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으며, 앞서 언급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서는 장기적으로 서비스대상을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 2월 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서와 가족정보제

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추가 서류가 있을 경우 이미지파일을 올리거나 주민센터로 팩스, 우편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물론 기존대로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구원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신청인이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온라인신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도 3만 1천명에서 4만 명으로 확대된다. 소득기준이 기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면서 9천명의 장애아동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취업 장애인의 경우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소규모시설(30인 미만)에 대한 지원기준이 신설되고 1인당 지원 금액이 9.5% 인상되어 월 16만 3,147원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의해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이 늘어난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활동 공간에서의 이동편의를 위한 설비 및 이동수단 등을 마련해야 하며, 보조건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시각장애인 교육에 필요한 점자자료, 화면낭독용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사소통 분야에서는 장차법과 관련하여 앞서 말한 교육기관을 비롯해 모든 법인과 의료기관에서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이 해당기관에 정보를 얻기 위해 점자자료·자정보단말기·대경준텍스트파일 등의 수단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방송을 편성하는 방송사도 기존 60곳에서 153개로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에서만 장애인 유형에 따른 편의(화면해설, 자막, 수화)를 제공해왔지만 케이블TV, 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사도 이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복지TV가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도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전파를 전달)해야 한다.

장차법과 관련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작업장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출입·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하며, 재활료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주어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화면낭독용대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등을 제공해야하고 낭독자, 훈련보조인 등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고용분야에서는 우선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이 인상되고 부담기초액 산정기준이 세분화된다.(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 하며, 부담기초액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금액을 말함) 올해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월 최소 62만 6,000원에서 최대 101만 5,740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기초액 산정기준도 기존 3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세분화했다. ①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3/4이상의 인원: 월 62만 6,000원 ② 의무고용 인원의 1/2~3/4 미만 인원: 월 78만 2,500원 ③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 월 93만 9,000원 ④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 101만 5,740원(최저임금액)

장애대학생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도 실시된다.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들이 1~2개월간 사업체, 정부, 공공기관에서 연수를 받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연수생에게는 월 40만원, 참여기업에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고등학생을 위해서는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를 실시한다.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6개월간 직무지도원을 배치해 현장실습훈련을 받도록 지원하며, 연수생에게는 1일 1만 2천원, 사업체보조금으로는 1인당 1일 1만 7,650원이 훈련수당으로 지원된다.

이번 호 ‘알기 쉬운 법률용어’ 코너를 보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가배상 소송이 급증한 이유는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인터넷 등을 통해 법률지식을 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한 몫을 했을 것이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가진 권리를 아는 것이 시작이다.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결핍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라지는 제도를 잘 기억해두었다가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거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자.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나의 권리라고.

~~~~~

## 독자마당

### 삶의 여유를 가르쳐준 책,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다」

#### 이헌진(충남 아산시)

우보천리,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걷는다는 말로 걸쭉하지 않고 오로지 한 길로만 걷는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느낌이 곧 빠름이고 여유가 태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야 한다. 책속에서 알게 된 이러한 가르침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책을 다 읽고 나서는 가슴 속 한구석에 든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책은 사학과 교수인 작가가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어 출소하기까지 부인에게 보냈던 옥중 편지를 엮은 것이다. 감옥이라는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 쓴 편지라고 하기에는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깊이가 있어서 읽는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서른여덟 해를 살아오면서 알팍한 생각과 행동으로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쳤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작가는 막연하게만 생각해 왔던 애국정신을 확연하게 보여 주었다.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유학을 다녀오고 중국 외교부에서 일을 하는 등 중국에서의 앞길이 보장된 삶을 거부하고 북한으로 돌아온 것은 순전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애국이란 일제 강점기나 6.25 전쟁 때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도 사무치게 조국을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에 내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게 살고 있는지 느껴져 다시 한 번 부끄러웠다.

작가는 분단된 현실을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으며, 남한으로 귀순한 뒤에는 북한에 남

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단 하루를 편하게 지내지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했으니 그 마음 또한 절절한 아픔으로 가득 했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진정한 학자를 만날 수 있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학자란 평생 공부만 하는 사람쯤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적어도 학자는 나라와 겨레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자기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알리려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대부분이 학자들의 그런 노력에서 나온 것이며 지금도 각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작가의 편지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실크로드학에 대한 열정은 존경스러울 정도였다. 그가 실크로드학에 전념하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외국에서 '왕오천축국전'을 썼던 고승 혜초에 관한 기록을 보고나서부터였다.(왕오천축국전: 통일신라 때의 승려 혜초가 쓴 인도 여행기-편집자 설명) 그 일은 곧 실크로드가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어졌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출옥한 다음 해에 '실크로드학'을 펴냈다.

그의 이런 모습은 혜초하면 그저 왕오천축국전을 썼다는 것만 알고 있던 나의 지식이 얼마나 어썩잖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쓰시마섬을 준다해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던 우장춘 박사도 이름 석 자만 알고 있었으니... 작가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 얕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보천리였다. (우보천리: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뜻)

우보천리를 통해 시간의 주인으로서 여유 있는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은 모든 것이 깊은 뜻을 품고 있었다. 감옥 뒤뜨락에서 햇빛을 따라 꽃봉오리를 여는 민들레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이 곧 가장 귀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낙엽을 보고 뿌리로 돌아가 흙으로 변하고 다시 거름이 되어 나무를 키우는 자연의 섭리를 곰곰이 되새기는 법을, 그리고 가을에 피는 국화를 보며 찬 서리를 맞으면서도 홀로 피어나 '오상고절'로 변함없는 절개와 기품을 뽐어낼 수 있음을...(오상고절: 심한 서릿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외로이 절개를 지킨다는 말로, 국화 또는 충신을 뜻함-편집자 설명)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 보다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더 아름답다는 생각도 들었다.

서른여덟 해를 살아오면서 알팍한 지식으로 아는 척하고 때로는 나를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며 가끔씩은 남보다 내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거침없이 행동한 것을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힘들다는 이유로 가족에게조차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것이다. 열심히 산다는 것과 잘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절감했다. 특하면 뜬눈으로 어슴푸레 밝아오는 새벽을 맞이하며 어느새 나는 세상과 등을 돌리고 있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날들을 버티어 내는 것만도 버거워 누가 건드리기라도 하면 날 카롭게 덤벼들 기세였다. 그러다보니 몸이 지치고 마음도 따라 지쳐 살아야하는 의미조차 잊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작가는 부족한 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조언해 주었다. 인간은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아는 슬기를 지녔기 때문에 '안빈낙도'란 말처럼 가난에 초연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떻게 사느냐이다. 세월이 나를 기다려 주지 않고 그 누구도 시간이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니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서 웅크리고 있는 것 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족함 속에서 넉넉함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남아있는 내 삶은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오로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우보천리를 가슴에 새기며...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1월 16일~1월 31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1월 16일(수요일)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이사회와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이사회에 참석했다.

17일(목요일)부터 20일(일요일)까지는 일본시각장애인연맹이 개최한 한일교류대회에 참석해 오사카 라이트하우스, 오사카 맹학교, 교토 라이트하우스 등을 방문했으며, 일본시각장애인연맹 다케시마 회장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22일(화요일)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에이블 뉴스에는 IL센터(중증장애인지립생활센터) 예산확대와 관련해 최동익 의원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었다.

23일(수요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제약산업육성 관련 간담회와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같은 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시련 등 두 곳의 이사회를 주재했다. 이날 메디컬투데이 등의 언론매체에는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주변 술집 단광고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조선일보 등에는 국민연금 유령수급자와 관련해 최동익 의원의 지적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24일(목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 참석했으며,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 확 인권 부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금요일)에는 시각장애인노인회와 면담을 나눈 후, 싱가포르 인터넷 신문 ‘채널뉴스 아시아’와 장애등급제 관련 인터뷰를 가졌다. 이어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우수사례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다음 날인 26일(토요일)에는 충청남도를 방문해 행정부지사와 정책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28일(월요일)에는 한시련 회장단회의를 주재하고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 주재 조선의원 오찬에 참석했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공청회’를 주최했으며, 헬스코리아뉴스 등의 매체에 해당 공청회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29일(화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단 오찬에 참석했으며, 이날 뉴시스 등의 매체에는 기초노령연금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정책과 관련해 최동익 의원이 제출한 자료와 더불어 최동익 의원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됐다.

30일(수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의원총회, 한국장애인재단 이사회, 민주통합당 정책위 회의에 연이어 참석했으며, 민주통합당 정세균 의원 빙모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31일(목요일)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부모 간담회’를 주최하는 것으로 2013년 1월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73)

### 1) ‘파파라치’의 순화어: 몰래제보꾼

파파라치는 ‘유명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특종 사진을 찍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지난 1997년 8월 31일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빈이 파파라치를 따돌리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파파라치라는 말이 널리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파파라치가 유명인을 몰래 찍는 직업 사진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범법 행위 장면을 몰래 찍어 제보하여 보상금을 타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변형되어 쓰이기도 한다. 파파라치가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된 계기는 2001년 3월 교통 위반 신고 보상금제가 도입되면서부터이다.

막대한 포상금을 타낸 각종 몰래제보꾼이 등장하면서, 우리말에서 파파라치는 합성어의 일부로 자주 쓰이게 되었다. 학파라치(학원 불법운영 제보), 카파라치(교통위반 제보), 주파라치(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 제보), 식파라치(불량식품 제보) 등 온갖 종류의 파파라치 합성어가 대중에게 퍼졌다. 우리나라에서 파파라치라는 말의 쓰임은 원래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몰래제보꾼이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예시

- ㄱ. 불법운영 학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원 몰래제보꾼(파파라치)제도가 도입된다.
- ㄴ.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한 신고 포상금제가 오히려 보상금만을 노리는 몰래제보꾼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2) ‘워터파크’의 순화어: 물놀이공원

워터파크는 ‘각종 물놀이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을 뜻하는데, 최근에는 물놀이공원에 온천욕 시설을 갖춘 곳이 많아 계절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특히 다양한 시설을 갖춘 대형 물놀이공원이 휴양지(리조트)마다 들어서기 시작하여, 많은 이들에게 인기 있는 휴가지로 손꼽힌다.

수영을 목적으로 하는 수영장과 달리 물놀이공원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 놀이 공원처럼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끼리 많이 찾고 있다. 특히 인공 파도를 만들어 파도타기와 같이 바다에서 가능한 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물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다. 워터파크라는 낯선 외래어 대신 아이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물놀이공원으로 다듬어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예시

- ㄱ. 볼거리와 놀 거리가 가득한 한강시민공원은, 물놀이공원(워터파크)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요?

ㄴ. 새로 개장한 ○○물놀이공원은 휴가철을 맞아 가족 단위 손님들에게 찜질방 숙박 요금을 무료로 제공한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홈페이지)/www.malteo.net